

#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182
----------	------

2024. 12. 17.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1. 제안경위

- 2024. 10. 16. 홍국표 의원 외 36명 발의 (2024. 10. 18. 회부)

## 2. 주문

-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의 마련과 인공지능 분야의 생태계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AI 관련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 건의함.

## 3. 제안이유

- 인공지능(AI) 기술은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화 혁신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발해 산업구조를 재정립하는 등 사회·경제·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제도적

인 지원이 정부 추진 주체나 개별 산업별로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이를 체계화한 종합지원과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에 담당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할 것을 촉구함.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은정)

- 인공지능<sup>1)</sup>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로서, 신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24년 3월 13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을 통과시켰으며<sup>2)</sup>, 미국의 경우 민간 주도의 산업을 추진해오다가 작년 10월 행정명령<sup>3)</sup>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윤리규정과 규제 사항을 마련하였음<sup>4)</sup>.
-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에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2019.12.17., 불임<sup>1)</sup>)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 정책이 여러 부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분야 중 하나임. (위키백과사전\_인공지능 정의)

2)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AI 기술의 정의와 적법 활용 요건 등을 적시하고, AI 기술을 그 위험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그 허용의 범위·한계를 명시하면서 규범을 위반했을 경우 그 AI 기술의 공급자 등에게 과징금 등 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함. (법무부\_해외규제 모니터링 제5호, 최신글로벌 인공지능(AI) 규범 동향 리포트, 2024.10.) (붙임 2 참고)

3)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4)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 국회도서관(2024-1호, 통권 제73호)

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정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sup>5)</sup>).

○ 국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sup>6)</sup>을 필두로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 보호,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안이 발의되어 왔음(붙임3).

-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 진흥’과 ‘규제 수준 및 안정성 확보’ 사이에 상반되는 주장이 제기<sup>7)</sup>되어 왔으며, 고영향 인공지능<sup>8)</sup>의 위험 범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법의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법률 제정이 지연되어 왔음<sup>9)</sup>).

-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붙임4)을 지난 11월 26일에 의결하고 12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임.

○ 이 건의안은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의 체계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인공지능을 둘러싼 국내·외 정책환경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p.7, 2021.11.

6) 의안번호 2022593호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_이상민의원 대표발의(2019.9.23.)

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p.12~16, 2024.7.

8)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함. “시기본법·단통법 폐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고영향 AI 규정도 추가” - 경향신문, 2024.11.26.

9) “진흥이나 규제냐...AI 기본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경향신문, 2024.09.24.



[붙임1]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내용 (p.6)

[붙임2] 유럽연합(EU) AI 규제법 (p.7)

[붙임3]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_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8)

[붙임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주요내용(p.9)

AI for Everyone, AI of Everything

#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디지털경쟁력 세계 3위**  
現 10위(UMD)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맥간지, KISDI

**삶의 질 세계 10위**  
現 30위(OECD)

~'30



## 01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AI 인프라	AI 기술 경쟁력	과감한 규제혁신	AI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민간 데이터 개방</li> <li>'AI 혁신 클러스터' 확산</li> </ul> <p>광주 AI 집적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1조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괄적 네거티브 규제(*20)</li> </ul> <p>선 허용 후 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올림픽 개최(*20)</li> <li>AI 스타트업 투자·지원</li> </ul> <p>AI 펀드 조성 미래기술 육성자금 사업화 바우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세대 AI 연구 선제 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시대 대비 '법제정비단' 발족(*20)</li> </ul>	

## 02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AI 인재양성 및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전면화	최고의 디지털 정부								
<table border="1"> <tr><th>고급</th><td>AI 관련학과 신증설</td></tr> <tr><th>전문</th><td>AI 교원 기업겸직 허용</td></tr> <tr><th>실무</th><td>AI 융합전공 개설 직군별 AI 역량 함양</td></tr> <tr><th>일반</th><td>초중등 SW 필수교육 전 국민 AI 평생교육</td></tr> </table>	고급	AI 관련학과 신증설	전문	AI 교원 기업겸직 허용	실무	AI 융합전공 개설 직군별 AI 역량 함양	일반	초중등 SW 필수교육 전 국민 AI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 AI 융합 프로젝트(AI+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세대 지능형정부 구현</li> <li>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li> </ul> <p>국민 맞춤형 복지 국민생활 서비스</p>
고급	AI 관련학과 신증설									
전문	AI 교원 기업겸직 허용									
실무	AI 융합전공 개설 직군별 AI 역량 함양									
일반	초중등 SW 필수교육 전 국민 AI 평생교육									

## 03 사람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AI 역기능 대응 및 AI 윤리 확립
<p>국민취업 지원제도 사회보험 적용확대 일자리정보 플랫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기반 사이버침해대응체계 고도화</li> <li>글로벌 수준의 AI 윤리체계 정립</li> </ul>

□ 제정 개요

- 제 정 일 : '24.3.13. 유럽연합 의회 승인(세계 최초 AI 규제법)
  - 규정별 관보 게재('24.6월)로부터, 최소 6개월~최대 36개월 후 단계적 시행
- 구 성 : 13장 113개 조항 및 13개 부속서
  - AI 시스템 위험도 분류 및 의무 부과, 벌칙조항, 행동강령 및 가이드라인 등 규정

□ 주요 내용

- EU 역내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의 위험도를 4단계로 분류(허용 불가능한 위험/고위험/제한적 위험/최소 위험)하고 차등적 의무 부과



※ 출처: 유럽의회조사처(EPR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자료를 재구성

-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와 배포자, 운영자 등의 투명성의 의무를 강조하며 의무위반 시 벌금 차등적 부과(최대 매출의 7%)

구분	대상	내용
범용 AI 모델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의무를 위반한 제공자	• 1천5백만 유로(약 220억 원)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3% 중 더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됨(제101조제1항)
금지된 AI 시스템	시장에 출시한 제공자	• 3천5백만 유로(약 500억 원)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7% 중 더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됨(제99조제3항)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의무를 위반한 제공자(대리인 포함), 배포자 및 수입·유통업체	• 최대 1천5백만 유로(약 220억 원)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3% 중 더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됨(제99조제4항) • 관할 당국의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75만 유로(약 10억 원)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1% 중 더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됨(제99조제5항)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	투명성 의무를 위반한 제공자 및 사용자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제99조제3항~5항에 언급된 금액 또는 비율 중 낮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됨(제99조제6항)

- AI 기술 혁신을 위한 조치 시행

- AI 규제 샌드박스 설립,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보호 조치 의무 등

**붙임3**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_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구분	연번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의결
20대	1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의원	2019.09.23.	임기 만료 폐기
	2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경진의원	2019.11.21.	
21대	1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의원	2020.07.13.	임기 만료 폐기
	2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양향자의원	2020.09.03.	
	3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송갑석의원	2020.10.19.	
	4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민형배의원	2020.10.29.	
	5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안민석의원	2021.05.17.	
	6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정필모의원	2021.07.01.	
	7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이용빈의원	2021.07.19.	
	8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윤영찬의원	2021.11.24.	
	9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	안민석의원	2022.04.18.	
	10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조해진의원	2022.08.24.	
	1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윤두현의원	2022.12.07.	
	12	인공지능책임법안	황희의원	2023.02.28.	
	13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안철수의원	2023.08.08.	
22대	1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안철수의원	2024.05.31.	대안 반영 폐기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의원	2024.06.17.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의원	2024.06.19.	
	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2024.06.19.	
	5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민형배의원	2024.06.28.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권철승의원	2024.07.04.	
	7	인공지능 기본법안	한민수의원	2024.08.22.	
	8	인공지능책임법안	황희의원	2024.08.27.	
	9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	배준영의원	2024.08.28.	
	10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이훈기의원	2024.09.12.	
	11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우영의원	2024.09.24.	
	1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이정현의원	2024.10.29.	
	13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	황정아의원	2024.11.01.	
	14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해민의원	2024.11.11.	
	15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의원	2024.11.11.	
	16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최민희의원	2024.11.14.	
	17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이인선 의원	2024.11.18.	
	18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이인선 의원	2024.11.18.	
	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의원	2024.11.18.	
	20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의원	2024.11.20.	

**붙임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대안) 주요내용****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4. 11.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2200053	안철수의원	2024. 5. 31.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 7. 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 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 회 회부 (공청회 실시, 2024. 9. 2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2200543	정점식의원	2024. 6. 17.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 의(2024. 8. 2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 위원회 회부 (공청회 실시, 2024. 9. 2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2200673	조인철의원	2024. 6. 19.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 의(2024. 8. 2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 위원회 회부 (공청회 실시, 2024. 9. 2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2200675	김성원의원	2024. 6. 19.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 의(2024. 8. 2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 위원회 회부 (공청회 실시, 2024. 9. 24.)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2201158	민형배의원	2024. 6. 28.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 의(2024. 8. 2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 위원회 회부 (공청회 실시, 2024. 9. 24.)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과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201399	권칠승의원	2024. 7. 4.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2024. 8.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공청회 실시, 2024. 9. 24.)
인공지능 기본법안	2203072	한민수의원	2024. 8. 22.	소위원회 직접 회부 (공청회 실시, 2024. 9. 24.)
인공지능책임 법안	2203235	황희의원	2024. 8. 27.	소위원회 직접 회부 (공청회 실시, 2024. 9. 24.)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	2203297	배준영의원	2024. 8. 28.	소위원회 직접 회부 (공청회 실시, 2024. 9. 24.)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2203960	이훈기의원	2024. 9. 12.	소위원회 직접 회부 (공청회 실시, 2024. 9. 24.)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2204250	김우영의원	2024. 9. 24.	소위원회 직접 회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2205013	이정현의원	2024. 10. 29.	소위원회 직접 회부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	2205189	황정아의원	2024. 11. 1.	소위원회 직접 회부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205457	이해민의원	2024. 11. 11.	소위원회 직접 회부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205458	정동영의원	2024. 11. 11.	소위원회 직접 회부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2205569	최민희의원	2024. 11. 14.	소위원회 직접 회부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2205639	조승래·이 인선의원	2024. 11. 18.	소위원회 직접 회부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2205643	조승래·이 인선의원	2024. 11. 18.	소위원회 직접 회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2205648	정희용의원	2024. 11. 18.	소위원회 직접 회부

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1.)에서 이상 19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6.)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1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

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에 따라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  
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  
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  
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  
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함(안 제6조).

라.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

원회를 두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인공지능 활용 촉진,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을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인공지능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21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음(안 제23조).

자.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성·신뢰성, 접근성,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공표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교육하여야 함(안 제27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인·기관·단체 등이 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인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30조).

카.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함(안 제31조).

타.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 식별·평가·완화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안 제32조).

파.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안 제34조).

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40조).